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835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6.2.25.	강상호	김준영	정주영	代정주영	하철승	02/25 代하철승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2016.2.23.

강 북 구
(자치행정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일정에 따른 선거사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선거개요

- 선거일 : 2016. 4. 13(수) 06:00~18:00
 - 사전투표 : 4. 8. ~ 4. 9(2일간) 06:00~18:00
- 투표장소 : 81개소(사전투표소 : 13개소)
- 개표장소 : 1개소(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체육관)
- 선출인원 : 국회의원 2명
- 유권자수 : 282,164명(19세이상 주민, 2015.12.31 기준)
 - 주민등록자 281,501명, 국내거소 재외국민 663명
- 주요일정

- 2016. 12. 15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 3.24~3.26. : 선거인명부 작성
- 3.24~3.25. : 후보자등록(2일간)
- 3.31~4.13. : 선거기간(14일간) ※선거운동기간 : 3.31~4.12.
- 4.8 ~ 4.9. : 사전투표(2일간)
- 4. 13. : 투표 및 개표

II

추진방향

-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선거사무 인력 확보 및 선거사무 실무자 교육
 - 선거관리 각종 기본통계 정비
-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 공직선거·재외선거 업무편람 교육 및 선거인명부 등 작성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 **공명선거 홍보**
 - 선거개입 오해소지 행위 사전방지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 홍보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협조**
 - 각종 선거교육·회의장소 등 시설 및 장소 지원 협조
 - 선거 홍보용 차량 및 투표소의 집기 등 장비지원 협조 등

《 제20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 》

주요항목	19대선거('12.4.11)	20대선거('16.4.13)
사전투표제 도입	- 부재자투표	-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 도입('13.1.1) ※전국 동주민센터 투표소 어디서나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변경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부여	-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제한	- 일반범 집행유예자 선거권부여 ※'14.6.4. 지방선거 적용 - 1년 미만 수형자 선거권 부여 ※'16.1.1.부터 적용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 미규정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적용	-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하고 있는 선원 적용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선거인명부 작성	- 직전 명부에 새로운 신청자 추가 등재
사전투표소 선거전용 통신망 구축	- 규정없음	-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의무화

1. 「선거사무추진반」 운영

- 운영기간 : 2016. 2. 22. ~ 4. 15.
 - ※ 서울시 선거사무추진반 설치운영 (2016.2.15. ~ 4.13.)
- 운영장소 : 4층 예산작업실
- 인원편성
 - 추진반장 : 1명(자치행정팀장)
 - 추진반원 : 8명(자치행정팀 6명, 지원인력 2명)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 ↔ 市추진반 ↔ 區추진반 ↔ 洞주민센터
(시선관위 협조지원) (구선관위 협조지원)
- 주요임무
 -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
 -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
 -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지원 등
 - 사전투표일(4.8.~4.9.), 투표일(4.13.)에는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전환

2.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기 간 : 1. 15.(금) ~ 3. 16.(목), 62일간
- 추진기관 : 13개동 주민센터
- 중점 정리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선거권 없는 자’ 조사·정리

- 기 간 : 3월 ~ 4월(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 대 상 : 선거일 현재 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자’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 추진방법 : 주민등록지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지 : ‘선거권이 없는자’ 명단 작성 후 등록기준지로 확인 요청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지에서 요청받은 명단과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대조하여 ‘선거권 없는 자’ 명단을 주민등록지로 통보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 작성기간 : 2.24. ~ 3.4.(10일간)
- 대 상 자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213.)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
- 명부 작성상황 통보
 - 서울특별시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자 처리

- 추진기간 : 3.22. ~ 3.26.(5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신고인명부 작성
 -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신고인명부 작성
- 명부 작성상황 통보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기타사항
 - 투표·거소투표용지 43.(일)까지, 선상투표용지 44.(월)까지 발송

○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인 조치

- 열람기간

-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등 : 3.5. ~ 3.9.(5일간)
- 국내선거인 명부 : 3.27. ~ 3.29.(3일간)

- 열람장소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동주민센터)
- ※ 구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동시 진행
- ※ 열람기간·장소 등은 열람 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구·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열람시간 : 09:00 ~ 18:00(공휴일도 열람조치) 단 인터넷을 통한 열람은 24시간 가능

- 열람내용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 ※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의 처리

-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신청방법 :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선관위에 통지

참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과 결정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신청방법 : 선거권자가 관할 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당해 구청장에게 통지

○ 선거인명부 확정

- 확정일 : 4.1.(금)
- 명부 확정상황 통보
 - 관할 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기타사항
 - 선거인명부 확정 후 구홈페이지 내 등재여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4.2.~4.13. 18시까지)

□ 사전투표

- 투표기간 : 4.8.(금) ~ 4.9.(토)(2일간)
- 투표시간 : 06:00 ~ 18:00
- 투표소 : 동 주민센터별 1개소
- 기타사항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 가능
 -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의무화

□ 투표

- 투표일 : 4.13.(수)
- 투표시간 : 06:00 ~ 18:00
 - ※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 실시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 설치,
 -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 공고
-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확보 시 유의사항 준수
 - 투표구안의 학교,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 확보
 - 장애인, 노인 등의 불편 최소화 조치
 - 가능한 1층 투표소 최대한 확보, 투표소 안내도우미 배치
 - 현장점검을 통해 임시경사로 설치, 장애인 편의도모
- 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
 - 인화물질,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선거당일 경찰·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고정배치
 -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요청(※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 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투·개표상황실 설치·운영

- 기 간 : 4. 13.(수) 05:00 ~ 개표 종료시까지
- 장 소 : 3층 기획상황실
- 인 원 : 40여명
- 운 영 :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자치구 ↔ 동주민센터
- 기 능 : 투·개표 진행상황 관리, 사건사고처리 등

3.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투표참여 홍보

- 선관위, 시민단체 등과 협조,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 구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운영 등

선거개입 오해소지 행위 사전방지

- 대내외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등 각종 활동시 선거법 위반 또는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
- 소속기관, 유관단체, 통·반장 등의 선거중립 관리 감독 철저

4.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인력지원 협조

- 투표구의 투표관리관 및洞위원회 간사·서기 등 투표사무종사원
- 투·개표사무 종사원
- 선전벽보 첩부,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 등

시설·장소지원 협조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후보자 선전물 발송작업 장소제공
- 투표소·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등

※ 장애인을 고려한 투표소 선정은 1층으로 하고, 2층 이상이 투표장소인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장소로 선정 조치

장비지원 협조

-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
-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의 정확한 관리

- 인력·시설·장비 등의 제반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IV 선거관리에산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 국가
- 지방의회의원, 단체장 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
- 교육감, 교육의원 : 당해 교육청

국비 배정내역

- 배정액 : 총 36,535천원(서울시 → 강북구)
※ 010(일반지방행정) - 013(지방행정·재정지원) - 1100(지방행정) - 1132(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 300(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 배정내역

(단위:천원)

계	일용 인부임	관 서 운 영 비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
		일반 수용비	공공 요금	특근 매식비	임차료		
36,535	4,112	17,759	2,176	7,769	319	2,409	1,991

- 정산보고 절차
 - 국비의 세출금 지급·반납 기한 : '16. 5월
 - 국비 지급·정산 기한 : '16. 5월말까지 마감후 市재무과에 보고

<행정사항>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등 법정선거 사무 추진

선거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선거 상황실 설치·운영
- 선거관련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선거사무 등 추진상황 보고체제 확립

- 보고체제 :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자치구
- 보고방법 : 전자우편 또는 선거관리시스템, 필요시 팩스(02-901-6108)

주요 보고사항

일 정	보고사항	비고
1.14 ~ 4.13	사건·사고 발생 상황, 미담·수범사례, 특이사항(발생시 즉보)	서식 1,2
2.24(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1차)	서식 3
3.4(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2차)	
3.14(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서식 4
3.22(화)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 예비 선거인명부 작성 : 3.17(목)	서식 5
3.27(일)	거소·선상투표신고명부 확정상황	서식 6
4.1(금)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서식 8
4.3(일)	투표소(사전투표소) 공고상황	서식 7
4.10(일)	투·개표 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서식 9
4.12(화)	투·개표소 설치상황	서식 10

붙임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붙임 2. 각종 제출서식

붙임 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5.10.16.부터 '16. 5.13.까지	금 목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의1 규§136의2
'15.11.15.부터 '16. 2. 3.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	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 1. 14.까지	목	각급선거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5.부터 4. 8.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수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선거운동기간('16. 3.31 ~ 4.12)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법§59)

붙임 1-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5. 11. 15(일)부터 '16. 2. 13(토)까지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 외 선 거 인 등록신청대상자		
	공관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16. 2. 24(수)부터 '16. 3. 4(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선거위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규§136의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218의9 규§136의9
'16. 3. 2(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5) 전 3일까지	법§218의34① 법§40③ 편람
'16. 3. 10(목)부터 '16. 3. 13(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3. 9)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3. 14) 전일까지 (선거일 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③ 법§218의34① 법§43②
'16. 3. 14(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선거위	선거일 전 30일	법§218의13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16. 3. 24(목)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투표 사무원 성명 등 공고	재 외 선 관 위	선거일 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16. 3. 24(목)부터 '16. 3. 2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 간	법§49 규§20
'16. 3. 26(토)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	중앙선거위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16. 3. 30(수)부터 '16. 4. 4(월)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선거인등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19,20 규§136의5,20,21,22

붙임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5. 12. 10(금)까지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현황 기준일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후 10일까지	규§10의2 ②
'15. 12. 21(월)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3개월까지	규§10의2 ①
'16. 1. 13(수)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개월까지	규§10의2 ③
'16. 3. 14(월)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회사	선거일전 30일까지	규§10의2 ③
	선박에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선 장	선상투표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규§10의2 ④
'16. 3. 22(화)부터 '16. 3. 26(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구·시·군의 장에게>	신고 대상자		법§38 규§11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16. 3. 24(목)부터 '16. 3. 2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6. 3. 27(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①
'16. 4. 4(월)까지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54의2 ①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선 장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규§86의2 ⑤
'16. 4. 5(화)부터 '16. 4. 8(금)까지	선상투표 및 해당 시·도위원회 전송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①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시·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전송받은 후 지체없이	법§158의3 ⑩ 규§86의3 ③
'16. 4. 12(화)까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 장	선거일전일까지	법§158의3 ⑧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 장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법§158의3 ⑧
'16. 4. 13(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구·시·군위원회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서식 1] 사건·사고 발생 보고(즉보)

수 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장

발 신 : ○○구 ○○과장

제 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관련 사건(사고) 발생보고

1. 사건(사고) 개요

- 일시, 장소, 사고경위(내용), 조치사항

2. 조치계획

- 자치단체, 검·경,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

〔 서식 2 〕 미담·수범사례, 특이사항 등 보고(즉보)

수 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장

발 신 : ○○구 ○○과장

제 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관련 미담(특이사항) 사례 보고

-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 작성

☞ 아래 서식 작성시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2.24, 3.4)

(단위 : 명)

시·도명	구사군명	① 공관명부 접수자			수정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④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	비고
		계	등재자	미등재자	증	감	구분	계	②공관접수 등재자	③구사군 접수 등재자			
							계						
							남						
							여						

-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구·시·군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
 ④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서식 4]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3.14)

(단위 : 명)

①접수 기관명	②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직권수정에 의한 감	④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⑥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대비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비고
	계			증	감				
	계								
	남								
	여								

-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접수기관명"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접수기관"의 순에 따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서상의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전까지 사망·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서 ③,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⑥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서식 5] 선거인명부 작성상황(3.22)

○ 총괄

(단위 : 명)

투표구명	인 구 수 (‘16년 3월 22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쉽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6]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3.27)

(단위 : 명)

투표구명	인 구 수 (년 월 일 현재)	선 거 인 수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현재)			확정된 (거소투표) · (선상투표) 신고 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 투표) · (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 소투표) · (선상투 표)신고인수 비율(%)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 · 선거인수 · 확정된 (거소투표) · (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서식 7] 투표소 공고상황(4.3까지)

○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 분	계	설 치 장 소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	개소						
장애인 편의	승강기 설치	개소					
	안내 도우미	명					

※ 기타 :

○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임 차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투 표 소	개 소					
장애인 편의	승강기 설치	개 소				
	안내도우미	명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상황

명 칭	소재지(시설명)	설치·운영기간(부터~까지)

[서식 8] 선거인명부 확정상황(4.1)

○ 총 괄

(단위 : 명)

투 표 구 명	① 인구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 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감		⑤ 확정된 선거인 수	⑥ 거소투표 신고인명 부등재자 수	⑦ 선상투표 신고인명 부등재자 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	⑧ 세대수	비 고
			증	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첨부한다.

○ 선거인명부확정내역

(단위 : 명)

투표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③ 외국인 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서식 9]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4.10까지)

○ (사전투표)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직	정부투자기관직원	지방공사·공단직원	일반인
명							

○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직	정부투자기관직원	지방공사·공단직원	일반인
명							

[서식 10] 투·개표소 설치상황(4.12까지)

구분	합계	장 소 별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개소)							
개표소(개소)							

※ 기타 :